

# 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554

제출년월일 : 2014. 10 . 6  
제출자 : 안산시장

## □ 제정이유

-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추진,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함

### ○ 사무위탁 (안 제8조)

- 비영리 법인이나 기관,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

### ○ 예산지원 등 (안 제10조)

- 사업 수행 관련 기관, 비영리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 제정조례안 : 붙임

###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 예산수반사항 : 붙임(비용추계서 참조)

### □ 사전예고(결과) : 의견 없음

### ○ 입법예고 : 2014. 8. 20 ~ 2014. 9. 11. (21일간)

### □ 기타 참고사항 : 붙임

### ○ 방침결정문

# 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안산시에 거주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중에 교육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공익형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및 복지형 노노케어(노인이 노인을 돌봄) 사업은 60세부터로 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 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소일거리 등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인일자리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협조·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평생프로그램의 활용)**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8조(사무위탁)**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보험가입)** 시장 또는 수탁자는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수탁자 및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사회복지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사회복지과장 박 광 옥
	담당·팀장 직위·성명	노인복지담당 차 현 실 (행정 2215)

# 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2554
------------	------

제안년월일 : 2014년 10월 30일  
제 안 자 : 문화복지위원장

## 1. 수정이유

- 60세부터 “노인”에 범주에 포함되는 노인일자리사업 유형을 구체화하여 규정함에 따라 향후 새로운 사업이 발굴될 시 이를 매번 다시 반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예상되어 조문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수정하고,
- 사업 수행기관 선정·심사를 위한 노인일자리 위원회와 관련된 조문을 신설함.

## 2. 주요내용

-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중 60세부터 참여가 가능한 사업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한 조문내용을 포괄적인 내용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1호).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선정·심사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위원회”的 설치근거와 구성에 대한 조문을 신설함(안 제6조, 제7조).
- 그 밖에 사업 참여자의 보험가입에 대해 보험료 지원규정을 명확히 하여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정함(안 제11조).

## **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중에 교육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공익형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및 복지형 노노케어(노인이 노인을 돌봄) 사업은 60세부터로 한다”를 “시장이 노인일자리사업 유형과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세부터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6조부터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노인일자리 위원회)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심사를 위하여 안산시 노인일자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노인일자리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노인복지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위촉하고, 회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 제목 “(보험가입)”을 “(보험료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참여

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를 “참여자  
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한다.

# 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중에 교육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공익형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및 복지형 노노케어(노인이 노인을 돌봄) 사업은 60세부터로 한다.</p> <p>2. (생략)</p>	<p>제2조(정의) -----</p> <p>-----</p> <p>1. -----</p> <p>---, 시장이 노인일자리사업 유형과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세부터로 할 수 있다.</p> <p>2. (제정안과 같음)</p>
<p>&lt;신 설&gt;</p>	<p>제6조(노인일자리 위원회)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심사를 위하여 안산시 노인일자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lt;신 설&gt;</p>	<p>제7조(노인일자리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노인복지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p> <p>1.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2.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p> <p>3.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p>③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위촉하고, 회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p>

제정안	수정안
제6조 (생략)	제8조 (제정안과 같음)
제7조 (생략)	제9조 (제정안과 같음)
제8조 (생략)	제10조 (제정안과 같음)
제9조( <u>보험가입</u> ) 시장 또는 수탁자는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u>보험료 지원</u> ) ----- ----- 참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하여야 한다.